

어촌 · 어항개발 표준품셈

2023. 01.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제 1 장 총 칙	1
1-1 목적	1
1-2 적용범위	1
1-3 용어의 정의	1
1-4 투입인원수의 산정	1
1-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	2
1-6 세부시행기준	2
제 2 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	4
제 3 장 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	9



▶ 제1장 총 칙

1-1 목적

1-2 적용범위

1-3 용어의 정의

1-4 투입인원수의 산정

1-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

1-6 세부시행기준

제 1 장 총 칙

1-1 목적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1-2 적용범위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,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.

- ①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
- ② 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

1-3 용어의 정의

- 1) “실비정액가산방식”이란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2) “직접인건비”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.
- 3) “투입인원수”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.
- 4) “기본업무”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,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.
- 5) “기준인원수”란 기본업무별 1단위(면적, 길이, 개소 등)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, 기준인원수 1(인·일)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.
- 6) “환산계수”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,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.
- 7) “보정계수”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.

1-4 투입인원수의 산정

- 1)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, 환산계수,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.

$$\cdot \text{투입인원수(인·일)} = \Sigma (\text{기준인원수} \times \text{환산계수} \times \text{보정계수})$$

- 2)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“투입인원수 산정기준”에 따른다.
- 3)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“환산계수 및 보정계수”에 따른다.
- 4) 각 기본업무별 환산계수, 보정계수,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5)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.

1-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

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, 변경, 추가할 수 있으며, 기본업무별 업무 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1-6 세부시행기준

- 1)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2)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해야 하며,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. 발주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·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.

부 칙

- 1) 2022년에 공표된 어촌·어항개발 표준품셈은 20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.
- 2) 2023년에 공표된 어촌·어항개발 표준품셈은 20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.



제2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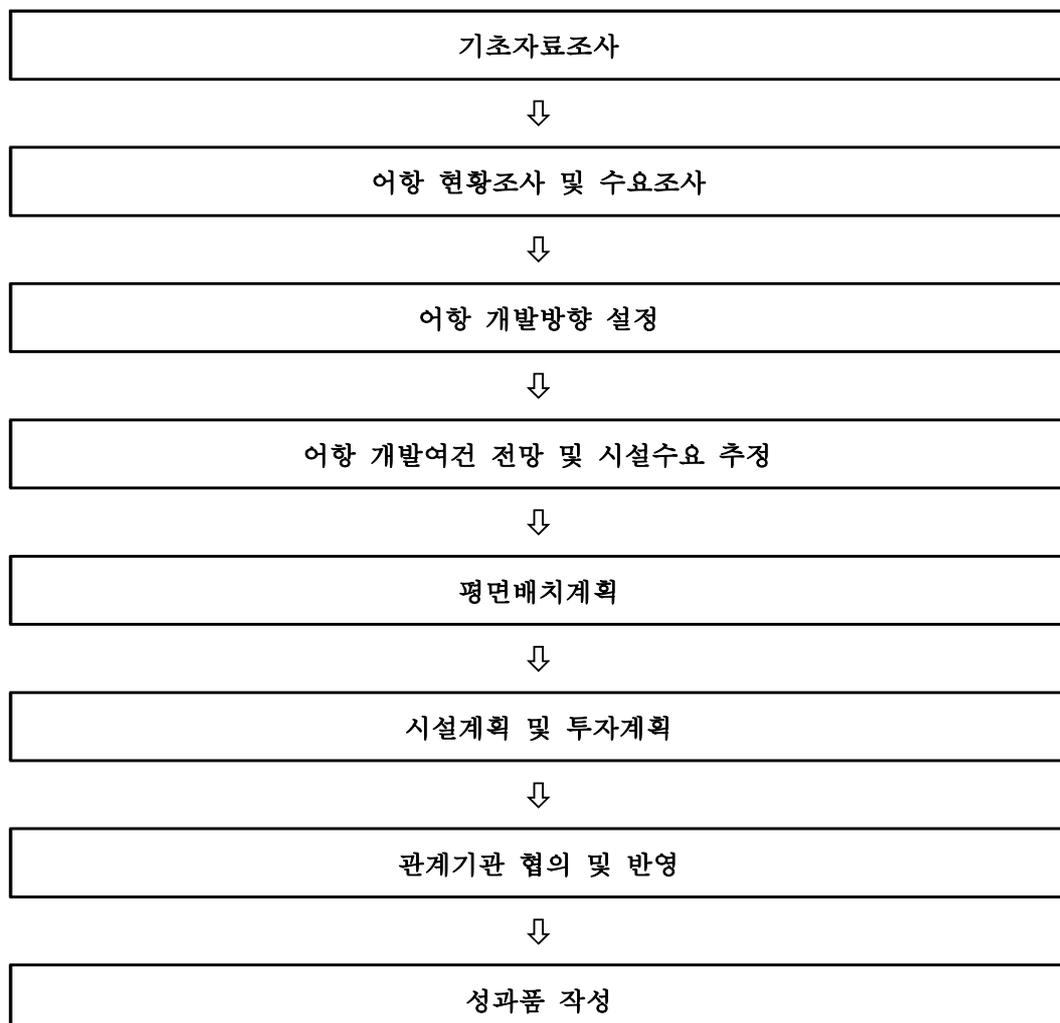
제 2 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

가. 정의

「어촌·어항법」 제4조의 어촌·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개발계획 수립 중 「어촌·어항법」 제19조의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해당되며, “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”이란 어항의 개발을 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방어항·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한다.

나. 추진절차

“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”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된다.



다. 업무별 주요내용

기본업무	업무정의
1. 자료조사	
1.1 과업착수 준비	○ 과업착수 준비 및 착수 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
1.2 자연조건 조사	○ 지형 및 지세(위치, 지형 및 지질, 지진현황 등), 기상자료, 해상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1.3 입지여건 조사	○ 주요 경제지표조사(인문·사회현황, 산업 및 경제현황), 토지이용현황, 수산자원현황, 배후 및 연계수송망 현황, 동력 및 용수현황, 상하수도 현황, 관광자원현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1.4 현지조사 및 답사	○ 개략적인 재료원, 작업장, 적출장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1.5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	○ 국가관련계획 및 부문별, 지역별 주요 개발계획, 어촌·어항개발계획, 수산업발전계획 등을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의미
1.6 어항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	○ 어항시설 현황조사, 이용현황,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1.7 어업권 조사	○ 어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1.8 지형 및 수심측량 성과검토	○ 지형 및 수심측량 조사결과에 대한 성과검토 업무를 의미
1.9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검토	○ 지반조사 및 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업무를 의미
1.10 용지, 보상물,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	○ 어항 주변 용지, 보상물,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의미
2.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	
2.1 어항 개발방향 설정	○ 대상 어항의 행정구역, 행정구역내 어항현황, 재적어선 및 타 어항 이용어선, 외래어선 등을 파악하여 어항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를 의미
2.2 어항 세력권 설정 및 어선척수 추정	○ 기존 어업 활동의 세력권을 설정하여 검토, 어선 척수를 추정하는 업무를 의미
2.3 어항 개발여건 전망 및 시설수요 추정	○ 어항개발 필요성, 문제점 및 개선방안, 어획량 추정/전망, 관광여객 및 기타 수요를 추정하는 업무를 의미
2.4 어항 평면배치계획 수립	○ 어항의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역시설 및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의미
2.5 시설계획 검토	○ 설계기준 설정, 기본단면 결정,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의미
2.6 연도별 투자계획	○ 평면배치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
2.7 인허가 검토 및 협의	○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, 검토 및 협의를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
2.8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	○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최소화 방안을 검토,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기타 개발 사항을 협의하는 업무를 의미
3. 성과품 작성	
3.1 기본계획보고서(별책부록, 도면 포함)	○ 기본계획보고서,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

라. 투입인원수 산정기준

기본업무	단위	기준인원수(인·일/단위)					환산 계수	보정계수		
		기술사	특 급 기술자	고 급 기술자	중 급 기술자	초 급 기술자		㉠	㉡	㉢
1. 자료조사										
1.1 과업착수 준비	식	4.56	6.44	5.09	3.22	2.15	①	●		
1.2 자연조건 조사	식	1.13	3.18	3.63	4.08	6.13	①	●		
1.3 입지여건 조사	식	1.59	3.40	3.63	4.08	5.45	①	●		
1.4 현지조사 및 답사	식	3.16	7.71	5.96	5.61	5.61	①	●		●
1.5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	식	4.56	9.12	7.36	4.21	2.81	①	●		●
1.6 어항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	식	1.86	4.64	6.81	5.26	6.19	①	●		●
1.7 어업권 조사	식	1.07	3.49	5.90	5.36	5.63	①	●		●
1.8 지형 및 수심측량 성과검토	식	2.17	6.50	5.57	5.26	5.26	①	●		●
1.9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검토	식	3.16	8.06	7.01	5.61	4.21	①	●		●
1.10 용지, 보상물,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	식	1.13	4.31	3.40	4.08	5.22	①	●		●
2.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										
2.1 어항 개발방향 설정	식	11.86	10.91	8.54	4.74	1.90	①	●		●
2.2 어항 세력권 설정 및 어선척수 추정	250,000㎡	2.85	9.49	9.96	8.54	7.12	③	●		●
2.3 어항 개발여건 전망 및 시설수요 추정	250,000㎡	7.59	9.49	8.06	7.59	5.22	③	●		●
2.4 어항 평면배치계획 수립	250,000㎡	19.68	21.86	20.77	16.40	8.75	③	●	●	●
2.5 시설계획 검토	250,000㎡	13.14	21.22	19.20	17.18	10.11	③	●	●	●
2.6 연도별 투자계획	식	1.49	10.40	9.41	9.90	8.42	①	●		
2.7 인허가 검토 및 협의	식	7.92	3.96	3.96	1.98	1.98	①	●		●
2.8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	회	2.67	3.10	2.53	2.24	1.01	②	●		●
3. 성과품 작성										
3.1 기본계획보고서(별책부록, 도면 포함)	식	13.28	16.13	17.08	17.08	12.33	①	●		●

주) 상기 품셈은 1개 어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마.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

구분	항목	세부내용	비고
환산계수	① 식	• 1.0	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	② 회	• 1.0	
	③ 면적	• $(\frac{A}{250,000})^{0.2}$ ※ A = 대상사업 면적(m ²)	
보정계수	㉗ 항의 종류	• 국가어항, 1.0 • 지방어항, 0.8 • 정주어항(마을공동어항), 0.6	
	㉘ 지역	• 동해/ 서해, 1.1 • 남해, 1.0	
	㉙ 기존계획 성격	• 기본사업(신규), 1.0 • 정비사업, 0.8	



제3장 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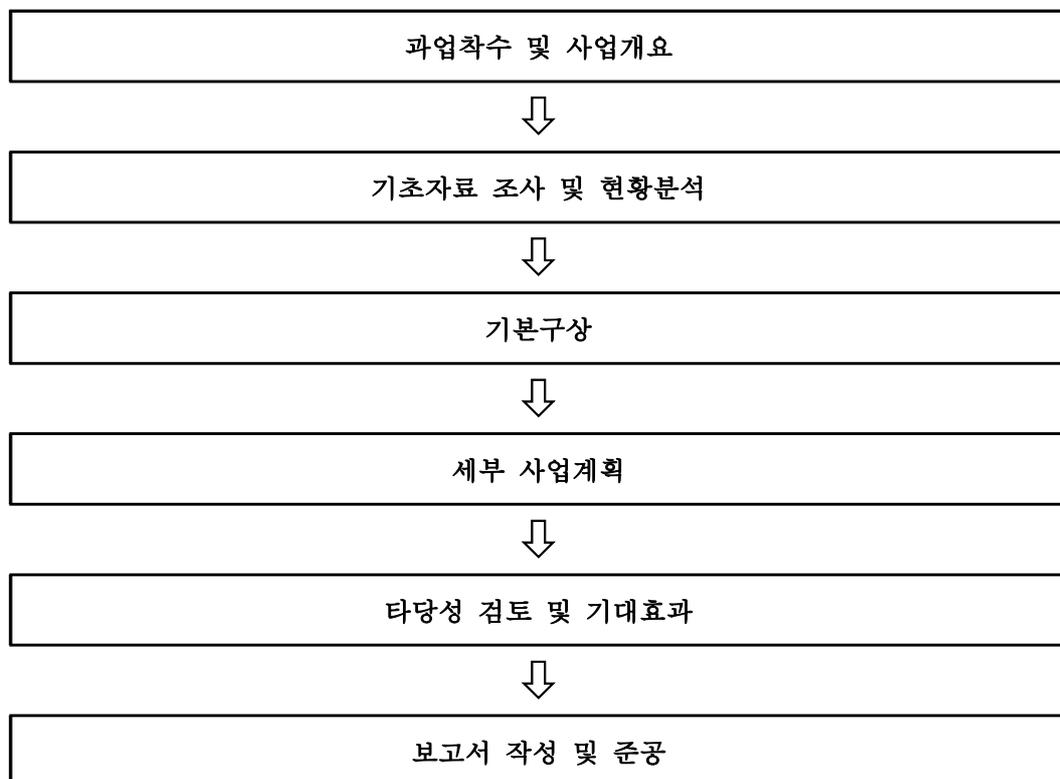
제 3 장 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

가. 정의

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은 「어촌·어항법」제4장의2 어촌·어항재생의 제47조의2 어촌·어항재생 개발계획의 수립과 제47조의3 어촌·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계획에 해당되며, 어촌과 어항의 다양한 자원, 자연경관 등 어촌·어항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한 가치향상, 지역 가치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구축, 지역성 회복,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한다.

나. 추진절차

“어촌·어항재생개발 계획”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된다.



다. 업무별 주요내용

기본업무	업무정의
1. 사업 개요	
1.1 추진배경 및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역이 수산업 기반의 어촌 경제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지리적 및 사회·경제적인 당위성 제시 ○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촌 경제거점의 기능과 역할 제시 ○ 민간투자의 선제적 유치 및 이를 위한 재정사업의 투자방향 제시
1.2 사업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간적 범위(중심어항(국가어항, 지방어항)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) 및 시간적 범위 제시
1.3 사업의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추진경위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 제시
2.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	
2.1 인구·사회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경제활동과 문화·복지·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와 배후지역 기능 설정 ○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추세와 변동요인을 통해서 사회적 여건 조사 및 분석 ○ 인적자원 및 조직역량 조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정도 조사 ○ 생활 SOC 현황 및 대상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준 조사
2.2 산업·경제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촌사회의 산업구조(1차~3차산업, 6차산업) 및 지속성장 가능성 진단 ○ 어촌 경제활동 중심지의 근간인 수산업 여건변화 조사 ○ 국민들의 여가레저활동 여건과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성 조사
2.3 해양생태·물리·환경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 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해 육역과 해역의 자연·생태환경·경관 여건 조사 ○ 육해상의 교통망 현황과 여객·화물물류 효율성 등 접근성 조사 ○ 어촌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 실태 및 여건변화 조사 ○ 공공시설, 유흥시설 등 인프라 시설 현황과 조사
2.4 관련계획 및 사업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위계획(국가계획, 광역계획 등)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조사 ○ 인근 지역의 관련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연계성 검토
2.5 사업 현황 종합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사업 대상지 위치, 사업대상지의 필지 및 도로여건, 교통현황 분석 등을 통한 계획수립 대상영역 설정 및 사업대상 지역의 공간특성 분석 ○ 유흥자원 및 잠재자원 분석, 공간환경 종합 분석 및 제시
3. 기본구상	
3.1 비전 및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 및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와 달성정도 제시
3.2 공간영역별 관리 방안 및 공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역별 공간구상,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, 경관관리 방안 제시 ○ 어촌 재생사업관련 브랜드 디자인 등 통합 디자인 방향 제시

기본업무	업무정의
3.3 재생사업 종합구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위사업의 위치와 사업추진전략, 콘텐츠의 기본방향 등 종합계획, 사업대상지의 영역별 공간관리 방안 제시 ○ 사업조성, 운영관리, 부대비용 등을 종합하여 개략 사업비 산출
4. 세부 사업계획	
4.1 세부 사업 개요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 사업별 달성 목표와 개발방향, 기대효과 제시 ○ 재정투자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시 ○ 건축물 조성계획이 필요한 경우 건축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비 계획 제시
4.2 세부 추진 계획 및 이행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진행 방식, 투자 규모, 연도별 투자계획 제시 ○ 사업관리 및 운영 계획 제시 ○ 인허가, 법적 적정성 등 검토 및 제시
4.3 타부처 사업 및 지역 연계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투자 및 재정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타 부처사업(공간, 기능, 거버넌스 등) 제시 ○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및 관련 법정계획, 개발사업, 국책 사업과 연계 방안 제시
5.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	
5.1 사업의 타당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정책·경제적 타당성 분석, 검토, 제시 ○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
5.2 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·정성적 효과 제시
6. 성과품 작성	
6.1 보고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편집

라. 투입인원수 산정기준

기본업무	단위	기준인원수(인·일/단위)					환산 계수	보정 계수 ㉔
		기술사	특 급 기술자	고 급 기술자	중 급 기술자	초 급 기술자		
1. 사업 개요								
1.1 추진배경 및 목적	식	0.57	2.00	1.75	1.44	0.84	①	●
1.2 사업 범위	식	0.51	1.86	1.75	1.33	1.15	①	●
1.3 사업의 추진경위	식	0.40	1.66	2.06	1.96	1.39	①	●
2.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								
2.1 인구·사회 부문	600,000m ²	1.70	3.20	5.24	5.36	4.10	②	●
2.2 산업·경제 부문	600,000m ²	1.68	3.35	5.27	5.36	3.95	②	●
2.3 해양생태·물리·환경 부문	600,000m ²	2.26	4.45	7.35	7.60	5.86	②	●
2.4 관련계획 및 사업 분석	600,000m ²	1.17	2.70	4.18	3.07	3.01	②	●
2.5 사업 현황 종합 분석	600,000m ²	8.99	14.14	18.27	13.81	11.52	②	●
3. 기본구상								
3.1 비전 및 목표	식	2.52	4.90	4.98	3.86	1.89	①	●
3.2 공간영역별 관리 방안 및 공간계획	식	4.25	9.03	8.66	6.67	4.65	①	●
3.3 재생사업 종합구상	600,000m ²	11.30	23.92	20.92	16.83	11.18	②	●
4. 세부 사업계획								
4.1 세부 사업 개요 및 계획	600,000m ²	13.07	26.14	25.82	24.27	19.60	②	●
4.2 세부 추진 계획 및 이행계획	600,000m ²	11.89	18.27	27.53	18.05	15.34	②	●
4.3 타부처 사업 및 지역 연계방안	600,000m ²	8.05	14.35	20.76	14.76	12.51	②	●
5.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								
5.1 사업의 타당성 검토	식	3.55	6.50	9.73	9.54	5.00	①	●
5.2 기대효과	식	1.04	2.00	4.15	3.16	1.80	①	●
6. 성과품 작성								
6.1 보고서 작성	식	1.38	10.03	13.85	7.95	6.14	①	●

마.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

구분	항목	세부내용	비고
환산계수	① 식	• 1.0	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	② 면적	• $(\frac{A}{600,000})^{0.2}$ ※ A = 대상사업 면적(m ²)	
보정계수	㉑ 앵커조직 참여도	• $1 - \frac{X}{100}$ ※ X = 앵커조직의 참여도(%)	

주 1) 보정계수 ㉑ 앵커조직 참여도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에만 적용한다.
 2)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제2장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적용한다.